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('22. 4. 14. 시행)됨에 따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므로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

-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(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)
-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·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(안 제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라목, 제33조제5호)

나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‘가입자 재정지원’ 근거 명문화

(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)
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가능 범위에 ‘가입자 부담금’도 규정하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

다.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(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)

-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에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’를 추가

라.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·위탁 규정 정비 (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)

-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‘연구사업, 퇴직연금사업자 평가’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

마.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(안 제43조)

-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서비스와 현물이전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에 ‘운용·자산관리업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거나 가입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’를 추가하고,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‘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관한 업무’와 ‘급여지급 관련 정보조회 및 처리에 관한 업무’를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”를 “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용자부담금”을 각각 “사용자부담금, 가입자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 그 이행 상황

제33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

제41조제7항 중 “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
2.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,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업무

3.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
사업자 평가 업무

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8조제2항”을 “법 제28조제1항의 운용
관리업무 및 법 제29조제1항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
게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거나 가입자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, 법 제28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
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9.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관
한 업무

11. 법 제29조제1항제5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조회 및 처
리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재정검증 결과의 통보)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(이하 “최소적립금”이라 한다)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,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,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,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	제6조(재정검증 결과의 통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) ① (생략)	제7조(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	② -----

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사용자는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,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획서”라 한다)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

3.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

제16조의15(지원금의 지원대상 등)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16조의15(지원금의 지원대상 등) ① -----
----- 사용자부담금,
가입자부담금 -----
-----.

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“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
1. (생략)
2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~ 다. (생략)
 - 라.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
 - 마. (생략)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3조(사용자의 금지행위)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

② -----

----- 사용자부담금, 가입자부담금 -----

-----.

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 그 이행 상황

마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사용자의 금지행위) -----

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

제34조(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) ①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41조(권한의 위탁·위임) ① ~

⑥ (생략)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.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34조(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) ① -----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권한의 위탁·위임) ① ~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다음 각 호의 -----
-----.

1.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

2.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, 퇴직연금업무 유관 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업무

⑧・⑨ (생략)

제4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·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사용자, 퇴직연금사업자, 근로복지공단,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,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,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,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3.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
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
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

⑧・⑨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
-----, 법 제28조제1항의 운용관리업무 및 법 제29조제1항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원하거나 가입자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, 법 제28조제2항-----

-----.

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9. (생략) <u><신설></u> 10. ~ 1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관한 업무</u>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11. <u>법 제29조제1항제5호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정보의 조회 및 처리에 관한 업무</u> 12. ~ 20. (현행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657